

제 1425 호  
1988.11.19

발행인 : 서울특별시 : 김 용 권  
편집인 : 공 보 관 윤 무 영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 시 보

## 차 례

◎ 공문시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 ..... 4  
 할품관리전환소요조치 ..... 5  
 할품관리전환소요조치 ..... 6

◎ 조 제  
 제 2384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복무조제중개정조례 ..... 14

◎ 고 시  
 제 857 호 : 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현경인가 ..... 14  
 제 855 호 : 인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15

(이면계속)

일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2374

제 866 호 : 사망지해제	15
제 869 호 : 사망지해제	16
제 870 호 : 민영주택건설입주자모집승인	20
제 871 호 :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승인	21
제 872 호 :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승인	22
제 87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3
제 888 호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24
제 88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26
제 891 호 : 수도권행정협의 회규약	27
제 900 호 : 사료성분등록고사	30
제 901 호 : 사망지정지해제고사	31

㉔ 공 고

제 764 호 : 흑석 1-1 구역주택개발사업공사원료공고	32
제 765 호 : 흑석 1-2 구역주택개발사업공사원료공고	33
제 766 호 : 가락토지구취적리사업지구원지계획변경인가및공사원료공람공고	34
제 769 호 : 청진구역 제 5-2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을위한공람	35
제 775 호 : 대지조성사업자등록말소	35
제 778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정파환지에정지 변경지정예따 른공람공고	36
제 77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변경)	36
제 781 호 : K·S 판매정지처분해제	38
제 783 호 : 제 2 종전 기공사업면허취소	38
제 784 호 : 도시계획안공고	38
제 790 호 : '88 추가분중소기업재정자금지원대상업체선정공고	39
제 802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및신설안공람공고	41
제 809 호 : 다동구역 제 2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	41
제 817 호 : 전기용품제조업허가취소	42

㉕ 구 고 시

제 4 호 : 도시계획사업 (시강) 시행허가변경	42
제 12 호 : 도시계획사업 (유치원) 시행허가변경	43
제 6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44
제 69 호 : 관입개각공고	45

㉔ 구 광 고

제 70호 : 특점열사용기차재시공업소행정처분..... 45

제 69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46

제 103호 : 민영주택건설사업 ..... 46

제 104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유치원)시행허가변경( 사업시행자변경및기간연기 ) ..... 47

제 281호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 48

제 296호 : 하천점용허가 ( 도시가스판매시설 ) ..... 48

제 88-99호 : 도시 계획사업 ( 시장 ) 시행완료..... 49

㉕ 사업소고사

한강관리사업소제 32 호 : 선박운항허가..... 49

한강관리사업소제 33 호 : 선박운항허가 ..... 50

회계관계공무원직인제기 · 등록조서 ..... 50

㉖ 사 령

공 문 시 행
---------

서울특별시

울설 25981-196

(6361)

1988. 11. 15.

수 신 : 수신처참조

계 목 : 돌봄관리전환소요조치

- 아 래 -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용 도	상 태	현 관리부서
전광유니트	10×15 매트릭스 1000×1500%	조	3	전광표시용	중고	세종문화회관
전원공급장치	AC220V 30 KW	대	1	전광판 전원공급	" "	" "
콘슈틀러	시제포함	조	1	숫자표시용	"	"
전광유니트	12×20 매트릭스 1320×2220%	조	3	전광표시용	"	올림픽설비담당관
전원공급장치	AC220V 20 KW	대	1	전광판 전원공급	" "	" "
콘슈틀러	시제포함	조	1	숫자표시용	"	"
제어장치	전원부포함	조	1	숫자표시용	"	"

서울특별시 장

수신처 : 시 산하전 기관

끝.

용 산 구

새마을 27070-31312

(731-0106)

1988. 11. 14.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 관리전환 계약내 명세서

물 품 명	규 격	수 량	장 부 가 격	취 득 일	상 태
국기제양대	H = 5 m R = 2.5 - 4 cm	99개	4,950,000 원	'88. 8-9	양 호

- 희망부서 관리전환요청 기간 : '88. 11. 25 까지
- 희망부서 관리전환요청 연락처 : 용산구청 새마을과. 끝.

용 산 구 청 장

수신처 : 시산하전기관

“뫏모아 하나로, 힛모아 세계로”

( 관 인 생 략 )

서 울 특 별 시

공원 30114-585

(731-5411)

1988. 11. 12.

수 신 : 수신처참조

( 3 년 )

제 목 : 물품관리전환 소요조치

1. 서울시설관리공단(어린이대공원) 보유물품중 물품관리법 시행규  
칙 제 61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별첨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여부불  
조치하녀 '88.11.26 까지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라며,

2. 위 기일까지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하겠음.

첨 부 : 관리전환 소요품목. 목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시산하전기관

2377

관리선환소요품목 ('87.'83총괄)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취득일자	상태	불용사유	처분의견	
1	45-02-001	소형석유난로	55cm - φ 25	4	182,000		미상	요정비품	노후화	관리선환
2	59-	녹용전조기	106×110×140	1	395,000		"	"	"	"
3	59-	사료절단기	NOA4593	1	280,000		"	"	"	"
4	42-10-035	소화기	8호, 8.51	46	744,878		"	중고품	"	"
5	71-15	알미늄칸막이	170×180	6	221,922		"	요정비품	"	"
6	58-15-014	컬라 TV수상기	21 inch	1	242,000		"	중고품	"	"
7	74-30-010	타자기	ADD-FACTT	1	80,333		"	"	"	"
8	71-10	던테이블	SD-1100	1	40,000		"	"	"	"
9	9999	환풍기		5	101,000		"	요정비품	"	"
10	38-95	측량기	150 LEVEL	1	300,000		"	중고품	"	"
11	9999	제도기		2	45,200		"	"	"	"
12		가로등관리보	현수유	30	15,000		"	신품	"	"
13		수은구안정기	700 W	3	25,200		"	중고품	"	"
14		"	1,000 W	2	24,000		"	"	"	"
15		모윤러타울기		4	3,920		"	요정비품	"	"
16		모수다마		89	890		"	중고품	"	"
17		분수뿌지		13	1,274		"	"	"	"
18		침샘프	150 W	3	3,000		"	"	"	"

제 1425 호

시

부

1986.11.19 57-7

'87 불용품 현황 (비품)

연번	불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취득일자	상태	불용사유	처분의견
1	34-39-621	권총고대	21cm	1	2,400	미상	폐품	노후화	매각
2	45-20-001	그린히타	sys-100 S	2	48,000	"	"	"	"
3	41-10	다이아몬드링컨	uy 8095	1	197,000	"	"	"	"
4	51-10-015	대패	3.5×8	1	4,250	"	"	"	"
5	71-10-058	도석보관함	150×220×28	2	135,000	"	"	"	"
6	59	도치램프	15×18	1	20,000	"	"	"	"
7	37-20-017	동력세초기	3,122v 22inch	1	55,000	"	"	"	"
8	59	동력전지기	KAWASAKI NT2	3	761,000	"	"	"	"
9	75-95-110	드릴셋트	20×22	1	27,000	"	"	"	"
10	77-30-001	라디오	금성	2	23,700	"	"	"	"
11	39-20-71	리어카	139×92	18	839,520	"	"	"	"
12	74-90	반응제노기	120×90	1	365,000	"	"	"	"
13	65-30	무영등	반사직경 26cm	1	55,600	"	"	"	"
14	71-10-005	목의자	회의용	6	96,600	"	"	"	"
15	73-10	믹서기		1	65,000	"	"	"	"
16	73-20-070	바나		1	52,000	"	"	"	"
17	43-20-040	배수모타펌프	2HP 0.3%	1	124,000	"	"	"	"
18	59-	부회기	GADI 1080 EGG	1	822,500	"	"	"	"
19	74-90	스톱워치	ROCAR 1/10	3	65,188	"	"	"	"
20	54-40-009	사다리	4m - 0.5	2	107,500	"	"	"	"
21	71-10-020	사단화일박스	173×45×63	1	17,306	"	"	"	"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취득일자	상태	불용사유	처분의견
22	67-30	삼각대	카메라용	1	45,000		미상		
23	41-10-006	선풍기	탁상용, 벽걸이	9	360,765				
24	45-02-001	소형석유난로	55cm - $\phi$ 25	2	91,000			요정비품	
25	9999	스프링쿨러		5	1,090,000			폐품	
26	59	iTV카메라	HIT-7000	1	279,312				
27	77-30-004	앰프	ck-ST 250W	1	82,000				
28	45-20	연탄난로	1구 3탄	7	139,300				
29	51-10-105	오스카	1/2 inch	1	42,900				
30	7110-005-4631	의자	4종	10	109,680				
31	9999	일문차	70 × 88 × 60	1	31,455				
32	9999	LPG 가스공병	20kg	1	22,766				
33	23-40-003	오토바이,	(H901) 7418991	1	323,500				
34	9999	양수기	1HP	1	85,000				
35	59	전기드릴	2.8A	1	35,000				
36	74-20-007	전가계산기	MA7 210 R	1	112,500				
37	51-30-019	절단기	철손잡이양손	1	22,000				
38	36-05-125	정수기	양수량 3T/II	2	65,700				
39	36-05-125	워터크리미		2	16,000				
40	71-10-005	계도용의자	45.90cm	1	10,000				
41	74-90	계도판	120 × 90 × 3.5	1	10,000				
42	9999	줄사다리	면방위용 15m	1	27,000				
43	53-35-101	포럼식조류상	110 × 110 × 100	17	1,191,610				

계 1425호

시

모

1988.11.19 57-9

연 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금 액	취득일자	상 태	분류사용	처분의견
44	7111-055-451	철재접의자	38×39×85	20	176,460		미 상	제 품	노후화 매 각
45	71-05-022	철침대	197×74×40	1	36,000		"	"	"
46	7110-003-3004	책 상	90×60×77	8	220,600		"	"	"
47	74-30-007	책크리이트	CW-3001	1	99,000		"	"	"
48	71-95	칸막이	176×180	2	14,200		"	"	"
49	9999	핸드모아	Federal 2	6	620,000		"	"	"
50	711-10-003	협 탁	45×82×73	2	41,600		"	"	"
51	59	흑크메타	600A6-300A	2	129,000		"	"	"
52	71-05-004	회의실탁자	사 자	1	82,500		"	"	"
53	9999	네스타		2	34,000		"	"	"
54	58-30	스피커	20 W	68	340,000		"	"	"
55	59	녹음건조기	160×110×140	1	395,000		"	요정비품	관리전환
56	59	사료절단기	NOA4593	1	280,000		"	"	"
57	42-10-035	소파기	8hp, 8.5i	46	744,878		"	중 고 품	"
58	45-02-001	소형석유난로	55cm - ϕ 25	2	91,000		"	요정비품	"
59	71-15	알미늄칸막이	170×180	6	221,922		"	"	"
60	58-15-014	couer TV수상기	21inch	1	242,000		"	중 고 품	"
61	74-30-010	다자기	ADD-FACTT	1	80,333		"	"	"
62	71-10	털테이블	SD-1190	1	40,000		"	"	"
63	9999	환풍기		5	101,000		"	요정비품	"
64	38-95	축량기	150 LEVEL	1	300,000		"	중 고 품	"
65	9999	제도기		2	45,200		"	"	"

57-10 제1425호 시

보 1988.11.19

2379

물 용 품 현 황 (공 구)								
연 번	품 명	구 격	단 위	수 량	금 액	취득일자	상 태	처분의결
1	진포섬	25 cm	개	1	800	미 상	폐 품	매 과
2	짧은포섬	16.5 cm	"	1	1,471	"	"	"
3	드라이버	+-	"	8	4,583	"	"	"
4	벤 치	8 "	"	4	10,352	"	"	"
5	칠 판	90×50cm, 180×90cm	"	3	43,000	"	"	"
6	헤드론	삼 성	"	1	5,500	"	"	"
7	벽	일 반	"	1	2,000	"	"	"
8	삼	막 삼	차 우	56	56,724	"	"	"
9	건치사위	과수용	"	6	8,346	"	"	"
10	가 위	18 cm	"	2	2,782	"	"	"
11	호 미	18 cm	"	19	16,164	"	"	"
12	호 크	일반 4 지	"	6	5,310	"	"	"
13	래 키	140×30 cm	"	12	14,400	"	"	"
14	손병이	일 반	"	2	3,600	"	"	"
15	장디쟁이	재각물	"	3	5,400	"	"	"
16	손노끼	중	"	1	3,100	"	"	"
17	평병이	일 반	"	7	12,600	"	"	"
18	박 무	87 cm (A형)	개	1	1,550	"	"	"

계 1425호

시

표 1988.11.19 57-11

연 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취득일자	상 태	처분의견
19	리어커펌프	45 cm	개	4	10,284	미 상	폐 품	미 각
20	사다리	4 m × 0.5	"	3	58,686	"	"	"
21	스프링롤러	이동식	"	29	710,560	"	"	"
22	구리스펌프	LEVER 35	"	1	1,500	"	"	"
23	안전벨트	120 × 5 cm	조	3	15,000	"	"	"
24	줄	양끝 150 %	개	2	1,700	"	"	"
25	몽키스패너	21 cm	"	3	7,998	"	"	"
26	부라이어	8 "	"	2	4,336	"	"	"
27	전기톱	27 × 10	"	1	215,000	"	"	"
28	양손가위	전지용	"	6	8,340	"	"	"
29	공드럼동	57.5 × 88.5 cm	"	2	15,631	"	"	"
30	낫	외낫	자루	25	10,000	"	"	"
31	톱	단면톱날 60 cm	"	10	41,187	"	"	"
32	괘 이	일 반	"	12	21,600	"	"	"
33	꽃가위	정원수용	"	3	4,173	"	"	"
34	꽃 살	일 반	"	4	1,800	"	"	"
35	도 끼	중	"	1	3,100	"	"	"
36	줄	22	개	2	1,250	"	"	"
37	헝가크래	15 × 10 cm	"	2	2,000	"	"	"
38	바이스루라이어	8 "	"	1	4,954	"	"	"

57-12 제 1425호 시

표 1988.11.19

2380

연 번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취득일자	상 태	처분의견
39	빠루망치	중	개	4	7,981	미 상	폐 품	배 각
40	쇠톱대	30 cm	"	1	450	"	"	"
41	파이프칼라	25 cm	"	1	4,000	"	"	"
42	흙 손	중	"	2	3,000	"	"	"
43	함마드라이버	30 cm	"	1	600	"	"	"
44	기계드릴기	φ 10%	"	2	25,000	"	"	"
45	파이프렌조	25 cm, 30 cm	"	3	3,498	"	"	"
46	널 바	14 cm	"	2	1,547	"	"	"
47	고압점정기	KDK 1000-3000	"	1	4,000	"	"	"
48	디지털온도계	일 계	"	2	28,000	"	"	"
49	망 치	중	"	4	6,285	"	"	"
50	쓰 배	농업용	"	1	14,500	"	"	"
51	양은줄	φ 55	"	1	3,800	"	"	"
52	조리칼	중	"	4	9,200	"	"	"
53	주전자	10 l	"	2	7,000	"	"	"
54	질 야	157×129cm 동활5-김용	"	1	29,600	"	"	"
55	쟁 기	경작용 154×145	"	1	24,000	"	"	"
56	사팔꽃씨	조방발용	"	4	38,000	"	"	"
57	작 살	일 반	"	11	22,000	"	"	"

제 1426 호 시

1988. 11. 19 57-13

**조 례**

(공 포 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8.11.1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회교육감 김삼준

◎ 서울특별시조례제 2384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조제 1 항중 다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광휴약시간개설시에는 그 일 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월말 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3시도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857 호

주택개발재개발사업 시행법검인가

-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23 호 (78.7.14)호 사업시행인가된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응암 4-2 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30 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56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고 도시재개발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88.10.26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명칭 : 응암 4-2 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 나. 위치 : 은경구 응암 4 동 250 번지 일대
- 다. 면적 : 202,736 m<sup>2</sup>
- 라. 사업시행기간 : 78.7.14-93.12.31까지
- 마.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바. 설계도서 및 조서 : 기인가 내용과 동일 (생략)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전몰조서 기인가 내용과 동일 (생략)

<p>◎ 서울특별시고시제 865 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8. 11. 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p> <p>2. 사업주체 : 지방공사 강남병원 직감 주택조합 대표 박세웅</p> <p>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p>		<p>가. 위치 : 송파구가락동 256-3</p> <p>나. 대지면적 : 2,498.7 m<sup>2</sup></p> <p>다. 용도 및 규모 : 아파트 11층 1동 66 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p> <p>라. 건축연면적 : 5,795.77 m<sup>2</sup></p> <p>4. 사업시행기간 : 88.11. ~ 89. 7.</p> <p>따로붙임 : 설계도서 ( 3락 )</p>				
<p>◎ 서울특별시고시제 866 호</p> <p>사 발 지 해 제</p> <p>사발사업법 제 20 조 1항, 같은법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내용과 같이 사발지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1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1988. 10. 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사 발 지 절 지 해 제 대 상 조 서</p>						
위	치	지	지	지	지	지
동대문구전농산32-1	임 야	179,795	119,807	119,807	1958. 6.21	
" 산 32-5	"	67,733	58,808	58,808	1958. 6.21	
" 산 32-6	"	24,495	11,603	11,603	1958. 6.21	
" 산 33	"	1,388	1,388	1,388	1958. 6.21	
" 산 41	"	27,668	11,310	11,310	1954. 4. 3	
동대문구압일리산 2-1	"	694	694	694	1954. 4. 3	

위 치	지 목	지 적 (㎡)	기 성 면 적	해 제 면 적	지 정 년 월 일
" 산 2-8	"	2,281	2,281	2,281	1958. 6.23
" 산 2-9	"	149,747	31,536	31,536	1954. 4. 3
동대문구회기산 4-1	"	326,666	202,811	202,811	1954. 4. 3
동대문구경림리산 4	"	316,055	316,055	316,055	1954. 4. 3
" 산 1-42	"	352,456	342,838	342,838	1954. 4. 3
동대문구이문산 5	"	95,203	23,116	22,116	1954. 4. 3
산 12-1	"	171,068	148,458	148,458	1954. 4. 3

○ 서울특별시고시제 869 호

사방지정지의 해제

사람사업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

1조 규정에 의거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88. 10.

서울특별시장

사방지정지의 해제토지내역

토 지 소 재 지				해 제 면 적 (㎡)	토 지 소 재 지				해 제 면 적 (㎡)
구	동	지 번	지 목		구	동	지 번	지 목	
은	죽 번	산 2-1	임 야	7,833	은	불 광	산 18	임 야	10,512
	소 계	1 필지		7,833		"	산 21	"	13,091
	불 광	산 3	임 야	15,074		"	산 24-1	"	12,236
	"	산 4-1	"	29,847		"	산 26	"	5,057
	"	산 5-1	"	18,245		"	산 32	"	17,554
	"	산 6	"	25,583		"	산 33	"	22,909
	"	산 7	"	15,204		"	산 37	"	8,926
	"	산 8-1	"	7,510		"	산 39-1	"	27,963
	"	산 10	"	6,545		"	산 41	"	11,304
	"	산 11	"	11,376		"	산 42	"	1,956,747
	"	산 13-1	"	6,698		"	산 43-1	"	48,787
	"	산 15	"	15,786		"	산 43-13	"	25,087
	"	산 16	"	9,521		"	산 43-14	"	47,439
	"	산 17	"	2,576		"	산 54	"	63,562



토 지 소 재 지					해제면적	토 지 소 재 지					해제면적	
구	동	기 번	지목	( ㎡ )		구	동	기 번	지목	( ㎡ )		
관	불 광	산 57	임야	3,768		관	광 현	산 51	임야	24,790		
	"	산 56	"	31,831			"	산 53	"	44,836		
	"	산 59-4	"	5,235			"	산 54	"	17,435		
	"	산 59-6	"	4,197			"	산 55	"	11,902		
	"	산 59-7	"	2,703			"	산 56	"	15,361		
	"	산 60	"	11,304			"	산 92-4	"	5,012		
	"	산 61	"	13,757			"	산 135	"	39,863		
	"	산 62	"	496			"	산 138	"	3,966		
	"	산 121	"	1,488			"	산 141-1	"	30,442		
	"	산 130	"	1,156			"	산 141-2	"	494		
	"	산 131	"	18,344			"	산 141-4	"	9,420		
	"	산 138-1	"	15,469			"	산 142-1	"	3,570		
	"	산 143	"	12,494			"	산 142-2	"	7,579		
	"	산 146	"	1,884			"	산 142-3	"	3,500		
	"	산 147	"	991			"	산 143	"	5,157		
	"	산 148	"	11,701			소 계	20 필지		390,553		
	"	산 149	"	3,273			구 산	산 32-1	임야	5,156		
	"	산 150	"	3,858			"	산 37-1	"	13,567		
	관	"	산 151	"	3,471			"	산 37-3	"	1,388	
		"	산 152	"	1,190			"	산 39-1	"	48,595	
"		산 155	"	10,116		"	산 41-1	"	9,918			
"		산 156	"	8,329		"	산 44	"	4,463			
"		산 159	"	1,091		"	산 45-1	"	3,390			
소 계		49 필지		2,603,575		"	산 45-2	"	7,222			
광 현		산 13-7	임야	8,779		"	산 47	"	8,529			
"		산 1-3	갑종지	793		"	산 48-3	"	661			
"		산 12-1	임야	103,723		"	산 48-6	"	5,125			
"		산 12-2	"	43,438		"	산 48-7	"	9,458			
"		산 13	"	9,473		"	산 55	"	158			

토 지 소 재 지				해 제 면 적 (㎡)	토 지 소 재 지				해 제 면 적 (㎡)
구	동	지 번	지 목		구	동	지 번	지 목	
관	구 산	산 57-1	임야	9,922	관	신 사	산 43	임야	1,884
	"	산 57-2	"	8,131		"	산 44	"	1,133
	"	산 57-3	"	19,435		"	산 45	"	9,818
	"	산 59	"	13,486		"	산 46	"	7,339
	"	산 60	"	9,818		"	산 47	"	19,337
	"	산 61	"	178,810		"	산 48	"	80,036
	소 계	19 필지		357,322		"	산 49	"	4,165
	용 알	산 6-19	임야	4,958		"	산 50	"	15,372
	"	산 6-20	"	2,085		"	산 51-1	"	11,405
	소 계	2 필지		7,043		"	산 51-2	"	4,760
	벌 른	산 23	임야	5,453		"	산 55	"	10,305
	"	산 31	"	58,869		"	산 58	"	5,255
	"	산 32	"	81,623		"	산 79	"	1,520
	소 계	3 필지		145,945		"	산 78	"	2,601
	신 사	산 22	임야	6,347		"	산 80	"	33,219
	"	산 26	"	3,421		"	산 92	"	5,554
	"	산 27	"	1,884		"	산 93	"	54,469
	"	산 28-1	"	3,471		소 계	31 필지		365,772
	"	산 29-1	"	6,545		중 산	산 20	"	4,958
	"	산 29-2	"	364		"	산 21	"	12,099
"	산 30	"	4,760	"	산 24-3	"	14,973		
"	산 31	"	18,347	"	산 24-6	"	10,971		
"	산 32	"	5,653	"	산 3	"	7,537		
"	산 33	"	10,909	"	산 4-1	"	2,049		
"	산 34	"	2,975	"	산 6	"	4,958		
"	산 35	"	1,884	"	산 7-1	"	32,425		
"	산 39	"	8,230	"	산 7-2	"	6,445		
"	산 42	"	22,810	"	산 13-2	"	34,111		

토 지 소 제 지				해제면적	토 지 소 락 지				해제면적
구	동	지번	지목	(㎡)	구	동	지번	지목	(㎡)
은	증 산	산 14	임야	7,934	은	수 백	산 12-1	임야	13,381
	"	산 15	"	4,860		"	산 13-3	"	6,129
	"	산 16	"	9,620		"	산 17-1	"	45,545
	"	산 17	"	2,876		"	산 19	"	22,816
	"	산 18	"	8,211		"	산 20-1	"	9,883
	"	산 19	"	5,256		"	산 21-1	"	1,289
	"	산 10-1	"	14,550		"	산 25-1	"	24,090
	"	산 24-8	"	2,198		"	산 30-2	"	15,955
	"	산 24-7	"	5,414		"	산 31	"	23,497
	"	산 24-9	"	657		"	산 32	"	7,536
	"	산 24-10	"	6,020		"	산 33-1	"	3,245
	"	산 25-1	"	657		"	산 35	"	6,545
	"	산 1-34	"	462		"	산 36	"	5,157
	소 제	23 필지		199,241		"	산 37	"	9,433
	경	수 백	산 1-1	임야		18,311	"	산 40-1	"
"		산 2	"	2,578	소 제	24 필지		409,425	
"		산 4-1	"	144,479	구과발	산 9-1	임야	5,156	
"		산 7-1	"	14,231	"	산 10-1	"	2,974	
"		산 8-4	"	14,576	소 제	2 필지		8,130	
"		산 8-5	"	2,678	정관외	산 1	임야	4,661	
"		산 8-8	"	6,445	소 제	1 필지		4,661	
"		산 8-12	"	1,091	총 계	175 필지		4,499,500	
"		산 9	"	7,536					

◎서울특별시고시제 870 호

민영주택 건설입주자 모집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82-1, 22 필지상에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11.  
서울특별시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3. 형질분양면적 및 세대수

(단위 : ㎡)

병형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세대당토지 분양면적	세대수	비고
48.15	31.05	17.10	48.15	32.37	6	
65.50	44.01	21.49	65.50	44.11	12	
61.65	41.13	20.52	61.65	41.45	6	
70.56	47.79	22.77	70.56	47.49	24	

4. 공급대상 부대복리시설명 및 규모  
5. 공급제외대상(일반분양시설) 복리시설명 규모

2. 사업주체 : 신일주택 배진수의 2인  
3. 사업시행지 및 위치면적 규모  
가. 위치 : 중랑구 신내동 482-1 22 호  
나. 대지면적 : 2,112 ㎡  
다. 규모 : 연립주택 3층 2동 48세대  
4. 사업기간 : 1988.7 ~ 1989.7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승인내역

1. 사업주체 : 신일주택건설 배진수의 2인  
2. 위치 및 규모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482-1, 22  
○ 규모 : 연립주택 3층 2동 48세대

6. 평형별 분양가격				(단위:천원)		
형	병	분양가격	평당분양가격	비	고	
	48.15㎡	23,135	1,589			
	65.50㎡	31,478	1,589			
	61.65㎡	29,634	1,589			
	70.56㎡	33,909	1,589			

◎서울특별시고시제 871 호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522  
-1,5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확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한다.

1988.11. .  
서울특별시

1. 사업명 : 민영주택입주자 모집공

고 승인

2. 사업주체 : 경운주택 최관현외 2인  
(동대문구장안동 363-1)

3. 사업시행지 및 위치면적 규모  
가. 위 치 : 중랑구신내동 522-1,5  
나. 대지면적 : 1,879.2㎡  
다. 규 도 : 연립주택 3층 2동 36세대

4. 사업기간 : 1988.8~1989.9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승인내역

1. 사업주체 : 경운주택 최관현외 2인  
2. 위치 및 규모  
○위치 : 중랑구신내동 522-1,5  
○규모 : 연립주택 3층 2동 36세대

3. 평별분양면적 및 세대수							단위:㎡
형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세대당토지 분양면적	세대수	비	고
81.99	54.93	27.06	81.99	62.78	12		
59.68	39.45	20.23	59.68	45.69	12		
62.84	42.09	20.75	62.84	48.11	12		

4. 공급대상 부대복리시설명 및 규모 5. 공급제외대상(일반분양시설)복리시설명 규모 6. 영형별 분양가격		(단위:천원)		
형 별	분 양 가 격	평 당 분 양 가 격	비 고	
81.99 ㎡	39,260	1,583		
59.68 ㎡	28,574	1,583		
62.84 ㎡	30,078	1,583		
◎서울특별시고시제 872 호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07-3,6호 필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11. . 서울특별시 장		3. 사업시행지 및 위치면적 규모 가. 위 치 : 중랑구면목동 507-3,6 나. 데지면적 : 1,310.8㎡ 다. 규 모 : 연립주택 3층 1동 24세대 다세대주택 2층 1동 3세대 4. 사업기간 : 1988.7~1989.7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승인내역  1. 사업주체 : 동흥건설주식회사 이 영웅 2. 위치 및 규모 * 위치 : 중랑구 면목동 507-3,6 호 * 규모 연립주택 3층 1동 24세대 다세대주택 2층 1동 3세대		
1. 사업명 :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2. 사업주체 : 동흥건설(주) 이영웅				

3. 형별 분양면적 및 세대주 (단위: ㎡)

형 별 (㎡)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세대당토지 분양면적	세 대 주	비 고
50.28	32.67㎡	17.61㎡	50.28㎡	37.02㎡	3	
52.44	34.29㎡	18.15㎡	52.44㎡	38.61㎡	3	
57.60	38.16㎡	19.44㎡	57.60㎡	42.41㎡	3	
68.52	46.35㎡	22.17㎡	68.52㎡	50.46㎡	3	
70.306	47.60㎡	22.616㎡	70.305㎡	51.78㎡	3	
82.68	56.97㎡	25.71㎡	82.68㎡	60.88㎡	9	
46.14	46.14㎡	-㎡	46.14㎡	33.97㎡	3	

4. 공급대상 부대복리시설명 및 규모

5. 공급계약대상

6. 평형별 분양가격 (단위: 천원)

형 별	분양 가격	평당분양가격	비 고
50.28㎡	23,996	1,576	
52.44㎡	25,000	1,576	
57.60㎡	27,458	1,576	
68.52㎡	32,665	1,576	
70.306㎡	39,415	1,576	
82.68㎡	33,516	1,576	
46.14㎡	21,996	1,576	

◎서울특별시고시제 87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 규정에 의  
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의 5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11. 7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2 ) 면적 : 11,238.70 평방미터 3 ) 규모 : 연립주택 3층 5동 184세대 부대복리시설 1층 2동 4 ) 사업시행기간 : 88.11~89.10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폐지 및 신설) : 아래
가.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철성주택개발대표 이용회의 2인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1 ) 위치 : 구로구궁동산 12, 197-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로	3류	6	370	오류동 81-53	궁동 192-8	
변    경	"	"	6	408	"	"	위치변경 으로인부 구간폐지 (폐지: 102 ㎡)
신    설	"	"	"	94	궁동 198-1	궁동 197-25	

◎서울특별시고시제 888 호

1988. 11.

서울특별시      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

건설부고시 제 131 호 (75.8.21) 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영동아파트 3  
지구(서초지구)에 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 20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  
령 제 2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법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고시하니 일반인은 공람하시  
기 바랍니다.

1. 지구개발 기본계획의 명칭  
서울특별시 영동아파트 3 지구  
(서초지구) 개발기본계획
2. 지구개발 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서초지구 : 서초구 서초동  
( 1,475,535 ㎡ ) 일대
3. 지구개발계획의 변경개요



변 경 개 요

가. 지구면적표 <span style="float: right;">(단위:㎡)</span>					
합 계	3-1 지구	3-2 지구	3-3 지구	3-4 지구	비 고
1,475,555	264,275	548,223	246,936	416,141	변경없음
나. 지구 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	㎡	%	
계	1,475,555	100	1,475,555	100	변경없음
지구 중심	15,225.04	1.03	15,225.04	1.03	•
지구 중심	44,844	3.04	44,844	3.04	•
분구 중심	19,194	1.30	26,982.43	1.83	7,788.43㎡ 증가
주택용지	950,838.5	64.44	943,050.37	63.91	7,788.43㎡ 감소
학교용지	155,378.53	10.53	155,378.53	10.53	•
공원용지	118,560	8.04	118,560	8.04	•
도로용지	171,514.93	11.62	171,514.93	11.62	•
나. 3-2 지구 이용계획 조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	%	㎡	%	
지구 면적	548,223	100	548,223	100	변경없음
지구 중심	15,225.04	2.78	15,225.04	2.78	•
지구 중심	13,319	2.43	13,319	2.43	•
분구 중심	2,000	0.37	9,788.43	1.78	7,788.43㎡ 증가
주택용지	328,435	20.85	380,646.57	69.43	7,788.43㎡ 감소
학교용지	40,729.03	7.43	40,729.03	7.43	•
공원용지	22,980	4.19	22,980	4.19	•
도로용지	65,534.93	11.95	65,534.93	11.95	•
4. 공람장소 및 방법			서초구청 주택과		
○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 공람방법: 개별방문 열람		

◎서울특별시고시제 889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실시  
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7(73.12.24) 호로 시설결정하고 서고 제 207 호 (73.12.24)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도로 신림 2동사무소 진입로의 2 개소 주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동시행령 제 26 조, 27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불 고시합니다.
2. 관계도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함.

1988.10.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 2동사무소진입로의 2 개소
-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신림 2동사무소 진입로의 2 개소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 = 6 - 9m, L = 326m$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 시행인가일로부터 7 일 이내  
○준공: '89.12.30
- 마) 수공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바) 토자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 사) 시행인가 설계도서: 별첨  
(제재생략)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일계 이용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관계인주소성명	권리명세
1	신림 2 동 118-22	영일권		1 식	문방구	신림동 108-43 윤철순	추 가

◎서울특별시고시제 891 호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1. 수도권행정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 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 48조 규정에 의거 구성하고 그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11.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별첨)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제 1 조 ( 목적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관계 시도단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 2 조 ( 사무소위치 )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 구성 ) 협의회는 수도권행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로 구성한다.

제 4 조 ( 조직 ) ①협의회는 회장 1 인과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고시에는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위원은 인천직할시장과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와 충청북도지사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 또는 부시장이 내려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④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 5 조 ( 기능 ) ①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결정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p>3.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p> <p>4. 인접지역과 관련된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p> <p>5. 행정구역 경계관리등의 사무의 협의,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p> <p>6. 한강의 개발, 관리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p> <p>7.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p> <p>8. 환경오염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p> <p>9. 시·도간 연결버스노선의 신설, 연장등 교통망확장에 관한 사항</p> <p>10. 주요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 등에 관한 사항</p> <p>1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p> <p>12. 수도권 광역 상·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13. 개발제한 구역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관련된 사항</p> <p>14.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p> <p>1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p>	<p>정보, 기술의 교환</p> <p>16.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수행상 필요한 사항</p> <p>①제1항 1호내지 12호 각호의 사항중 인접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할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6조 (협의방법) ①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p> <p>②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p> <p>제7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②정기회의는 년 2회로 하여 2~3월과 8~9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p> <p>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외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④회장은 회의가 있을때마다 회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p> <p>⑤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p>
--	---

<p>이내에 협의회의 개최결과를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8 조 ( 사무처리 )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인과 서기 3 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서울특별시외 기획관리실 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자 상인 위원회 지정하는 기획관리실 소속 계장 1 인으로 한다.</p> <p>제 9 조 ( 회의록 작성 )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p> <p>제 10 조 ( 자료제출요구등 )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 11 조 ( 미합의사항의 조정요청 ) 회</p>	<p>장은 협의회에서 2 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외의 각 시도간의 협력사항은 국무총리에게, 기타 시, 도간의 관련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 12 조 (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내무부장관 또는 국무총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제 13 조 ( 자문위원 )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 의장, 관련공공단체의장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회장이 위촉한다.</p> <p>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	---

제 14 조 ( 실무협의회 )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관계국 과장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의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 8 조 제 1 항, 제 2 항을 준용한다.

④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실무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을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 경비부담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개시 마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 16 조 ( 회계 )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년 첫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며 협

의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 규약개정 )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회의 찬성으로 한다.

제 18 조 ( 보칙 ) 협의회가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8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제 900 호

사료성분 등록고시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사료성분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88. 11.

서울특별시장

1. 제조업체명 : (주)기원배합사료공장
2.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29-6
3. 대표자 : 김재방

4. 상품등록내역							
등록 번호	사료의 명칭 및 용도	사 료 성 분 량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칼슘	인
16 -251	주문용계전기 2 0 - 4 주 (펠렛 또는 가루)	이상 19.0	이상 3.0	이하 6.0	이하 8.0	이상 0.7	이상 0.5
16 -252	주문용계전기 1 5 주 - 출하 7 일전 (펠렛 또는 가루)	17.0	3.0	5.5	8.0	0.7	0.5
16 -253	매추리사료 2호(유정용) (펠렛 또는 가루)	21.0	2.5	7.0	14.0	0.7	0.5

<p>◎서울특별시고시제 901 호</p> <p>사방지정지 해제</p> <p>1. 사방사업법 제 30조 1항에 의거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p> <p>가. 사방지정지 해제내역</p>	<p>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용원복지과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88.</p> <p>서울특별시장</p>
---	--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비 고	
시	구	동	지 번	(㎡)	(㎡)		
서울	마포	대 영 노	홍 리	산 1-27	58,443	58,443	
				산 3-9	5,355	5,355	
		" "	교 산	산 2	8,330	8,330	
				산 2-2	16,859	16,859	
		" "	상 수 상	"	산 2-5	3,272	3,272
					산 1-1	20,827	20,827
		" "	" "	"	산 6	5,157	5,157
					산 11-1	9,619	9,619
					산 12-1	6,446	6,446
				"	산 14-1	17,950	17,950

소		채		지정면적 (㎡)	해제면적 (㎡)	비고
시	구	동	지번			
		삼	산 14-6	1,190	1,190	
		"	산 14-7	4,760	4,760	
		"	산 14-18	9,719	9,719	
		"	산 14-20	4,760	4,760	
		"	산 14-21	12,396	12,396	
		"	산 14-22	8,330	8,330	
		"	산 26-1	102,248	102,248	
		"	산 26-28	7,140	7,140	
		"	산 34	6,743	6,743	
		중	산 5	5,652	5,652	
		"	산 7	5,256	5,256	
		성	산 33	3,867	3,867	
		"	산 48	4,462	4,462	
		"	산 58	3,285	3,285	

나. 사방지정지 해제 도면: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비치도면과 같음 (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764 호

혹석 1-1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시공시 제 659 호 ('86.9.10) 르 사업시행 인가된 혹석 1-1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1988.10.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혹석 1-1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동작구 혹석동 11-1 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31,616 ㎡ (지구계 분할로 감 8 ㎡)

라. 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동작구 혹석동 11-1

성명: 혹석 1-1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조합장 주동식



다. 완료내역

1) 건축시설 (아파트상가, 노인정 및 관리실, 지하주차장, 기타 부속건물)

- 건축면적 : 6,463.43 ㎡
- 건축연면적 : 91,430.46 ㎡
- 층수 : 지하 1층~지상 15층
- 주용도 : 주거 ( 660 세대 )

2) 부대시설

- 조경면적 : 4,570 ㎡
- 단지도로포장 : 12,330 ㎡
- 놀이시설 : 3개소 1,302.5 ㎡
- 주차시설 : 478 대
- 전기 및 통신시설 기타부속시설

- 바. 사업비 : 35,458,384 천원
- 공사비 : 20,801,423 천원
- 국공유지대입비 : 838,230 천원
- 국공유지현상금 : 14,852 천원
- 건물보상비 : 483,467 천원
- 조합운영비 : 120,000 천원
- 조합원대물보상 : 13,030,373 천원
- 예비비 : 169,991 천원

◎서울특별시공고제 765 호

흑석 1-2구역 주택개발 재개발 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고시 제 805 호 ('86.11.5)로

사업시행 인가된 흑석 1 - 2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1988. 10. 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흑석 1 - 2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동작구 흑석동 26-6 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44,450.10 ㎡

라. 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 동작구 흑석동 33-93

성명 : 흑석 1 - 2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조합장 임상규

마. 완료내역

1) 건축시설 (아파트상가, 노인정 및 관리실, 지하주차장 기타 부속건물)

- 건축면적 : 8,614.46 ㎡
- 건축연면적 : 118,020.26 ㎡
- 층수 : 지하 1층 - 지상 15층
- 주용도 : 주거 ( 950 세대 )

2) 부대시설

- 조경면적 : 6,970 ㎡
- 단지도로포장 : 9,817.83 ㎡
- 놀이시설 : 3개소 1,324.44 ㎡
- 주차시설 : 626 대
- 전기 및 통신시설 기타부속시설

- 바. 사업비 : 44,819,106 천원
- 공사비 : 28,546,111 천원
- 건물보상비 : 1,020,284 천원
- 조합운영비 : 200,000 천원
- 국공유지매입 : 833,610 천원
- 불하대이자 : 125,041 천원
- 예비타 : 384,265 천원
- 조합원대물보상 : 13,709,795 천원

○서울특별시공고제 766 호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합지  
계획변경인가 및 공사완료공람공고

1. '82.3.20 사업시행인가 되고 '83. 8.8일 자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55조, 제61조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업 및 환지계획변경(인가)와 공사완료시행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14일간 보입니다.

가. 환지계획 변경내용

-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결과 환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변경정리
- 일부지역 민원요청에 의한 환경변경처리 (별첨보고서)
- 경미한 공공시설의 변경정리

- (면적증감, 도로연장등) : 별첨
- 환지계획 변경조서 : 별첨
- 나. 공사완료 내용
  - 사업명 :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 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시행기간 : '82.3.20 - '88.12.31
  - 공사시행내역
    - 토 공 : 10,852,222 ㎡
    - 배수공 : 334,829 m (암거, 우수, 우수관)
    - 포장공 : (차도) 15,514a, 공동구 7,420 m
    - 구조물공 : 교량 및 지하차도 등 10 개소 (내역 : 별첨)
    - 조경공 : 공원조성 - 공원조성및 절개지단장 13 개소, 가로수식재 5,611 주
    - 상수도공 : 161,243 m
    - 가로등시설 : 1,101 등
    - 지장물보상 : 토지 34,307 ㎡, 건물 2,078 동
    - 이전비, 기타 : 1 식
  - 사업비 정산내역 (별첨)
    - 당초계획 75,000 백만원
    - 변경시행 112,995 "
  - 사업비 자원별내역 (별첨)
- 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명

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8.10.2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공고제 769 호

청진구역 제 5-2 지구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시고시 제 928 호 ('86.12.23)

로 사업시행인가된 청진구역 제 5-2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거  
발법 제 1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  
행 변경인가(기간연장) 하고자 동  
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 동 시행구역내의 토지등의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의견  
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  
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통지할 것  
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

로 갈음합니다.

1988.10.27.

서울특별시

가. 변경내용 : 기간연장(기타변경없음)

· 기장 : 86.12.23-88.11.30

· 변경 : 86.12.23-89.11.30

나. 공람기간 : 88.10.27-88.11.26

다.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서울특별시공고제 775 호

대지 조청사업자등록알소

주택건설촉진법 제 7조 제 2항 규정의  
의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동법시행령  
제 10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10.

서울특별시

1. 상 호 : 주선동건설
2. 대표자 : 이영자
3. 영업소소재지 : 성동구 마장동 518-19
4. 등록발소사유 : 주택건설촉진법 제 7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9조의 2 위반

◎서울특별시공고제 778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지점과  
환지예정지 변경지점에 따른공람공고

1. 영등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아파  
트지구내 공공용지 저속토지중 불  
합리하게 환지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요가, 서울특별시 공  
고 제 623 호 (1988.9.2)로 환지계  
획 변경인가 및 환지에정지 변경  
공람공고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  
획을 수립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인가라고 같은법 제 56 조의 규  
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하였  
기 이를 공고하며, 아울러 공납거  
간내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중 환  
지계획의 일부 재조정 대상토지는  
같은법 제 55 조,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14 일간 공람합니다.

1988.10.

서울특별시 관

가. 사업명 : 영등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치 :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서  
초동 각 일부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각 일부  
다. 금회지정토지 : 299필지 34,127.5명  
라. 금회재조정 (공람공고) 토지 :  
38 필지 5,837.7 명

마. 기타 :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국 도시개발과와 서초구청,  
강남구청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  
이나 미수령시는 이 공고로 잘  
음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77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변경)

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적 승인한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코져 도시계획법 제25조  
2 항 및 동시행령 제 27 조 2 규정  
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  
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  
여는 이 공고로 잘음합니다.
3. 관제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1988.10.  
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규모	착공	준공	결정고시 일자	지적고시 일자
신림2동 119-13-118-19	도시계획사업(도로) 신림2동 사무소 진입로외 2개소 도로개설 공사	B=6-9 L=326	88.3	88.12.30	서울시고시 제 207호 73.12.24	서울시고시 제 207호 73.12.24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사 :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 관악구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  
 가)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기록과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 건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주소성명	소유권이의의권리명세	비고
						관계인주소성명		
1	신림동 118-22	담장, 대문, 상수도 개략기 건물	적벽돌 스타브	10m 2.1㎡	담장, 대문 문방구	김인배 신림동 1513-2		추가
2	신림동 119-13	담장, 대문, 출입문 상수도개략기, 화장실	적벽돌	11m	담장, 대문 출입문	안인수 신림동 119-13		"
3	신림동 119-12	대문		1식	대문	이희준 신림동 119-12		"
4	신림동 119-11	담장, 대문, 화장실 상수도개략기	부 러	12m	담장, 대문	배상훈 신림동 119-11		"
당초	신림동 99-30	건물, 대문	스라브 10㎡	1식	주거	이종우 신림동 378-7		당초
현경	신림동 99-30	건물, 대문	스라브 10㎡	1식	주거	정용구 신림동 99-29		변경

<p><b>◎ 서울특별시공고제 781 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K. S 판매정지처분해제공고</b></p> <p>1988.7.27 일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 506 호)로 K. S 판매정지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하고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 10. 서울특별시 장</p> <p>1. 업체명 일호유리㈜ 2. 대표자 권 오 순 3. 소재지 서울시강서구목동 191</p>	<p>4. 규격번호 KSL 2002 5. 규격명 강화유리 6. 종류등급 명면 강화유리 7. 해제일자 '88.10.27</p> <p><b>◎ 서울특별시공고제 783 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취소</b></p> <p>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1 항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10.28 서울특별시 장</p>
---	---

- 다 - 음 -

면허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분사항	사 유
445	삼형전설㈜	강남구 역삼동 790-1	김형만	면허취소	전기공사업법
983	태운전설㈜	강남구 삼성동 65	차재윤	.	제 31 조 1 항

<p><b>◎ 서울특별시공고제 784 호</b></p> <p style="text-align: center;"><b>도 시 계 획 안 공 고</b></p> <p>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 학교, 도로 ) 의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안을</p>	<p>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 일간 공람합니다.</p> <p>2. 공람중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p>
--	--

전이 있을시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8.11. 2  
 서울특별시 장

**공 략 개 요**

다 음  
 가. 공람기간 : 88.11.2 ~ 88.11.16.  
 (14일간)  
 나. 공람장소 : 김복구청도시계획비과

구분	도시계획안	위 치	규 모	비 고
도로	기 정	정릉동 647의 22 - 정릉동 640의 74	B = 6 m L = 151 m	
도로	변 경	"	"	일부구간신청변경
학교	기 정	정릉동 647-27 주변일대	A = 8,420 m <sup>2</sup>	
학교	변 경	"	A = 8,748 m <sup>2</sup>	북악중학교면적 증 348 m <sup>2</sup>

라. 관련도서 :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790 호

'88년도추가분중소기업재정자금  
 지원대상업체선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 및 동집행요령에 의거 '88년도 중소기업 재정자금 지원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용자 금액을 결정하였기 공고합니다.

1988.11. 2.  
 서울특별시 장

1. 용자총액 : 540,000 천원
  2. 업체당용자액 : 별첨 참조
  3. 자금구분 : 운전자금
  4. 용자조건 :
    - 이 자 율 - 1년 10%
    - 상환기간 - 3년 (1년 6개월  
거치 1년 6월 분할상환)
  5. 용자선정업체 : 13개 업체
- \* 용자 선정업체 당단 및 용자 결정금액 (별첨)

용 자 선 정 업 체

		(단위: 만원)					
번호	업체명	구분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용자	
						결정액	비고
1	㈜미스타큐	임한중	중로구	송인동 14-22	의류	3,000	
2	오성기계공업㈜	봉지순	중랑구	상봉 1동 183-2	기계(석재) 제조	3,000	
3	원림통신전자공업사	김정수	중랑구	망우 2동 488-1	통신기부품	3,000	
4	고려기계공업㈜	우동석	도봉구	방학 1동 724-2	바인다	3,000	
5	대창실업	곽종원	노원구	창 2동 628-17	원단편조	3,000	
6	금란섬유공업사	김완숙	노원구	월계 1동 411-10	색타입가공	3,000	
7	백성정밀	변재은	구로구	신림동 276-20	기계부품	3,000	
8	세원섬유	남승욱	구로구	고척동 78-2	의류입가공	3,000	
9	대의공업사	조현광	구로구	시흥 1동 991-21	자동차부품	3,000	
10	㈜태화기연	김성현	구로구	온수동 100-90	크레인저장품	3,000	
11	진우공업㈜	박창하	관악구	신림동 592-18	전자부품	3,000	
12	원일동상	김동철	송파구	마천동 6-4	골프장갑	3,000	
13	고려화학공업사	김전만	송파구	오금동 240-2	부라자부품	3,000	
14	본막스상사	조성환	강동구	둔촌동 426-1	의류입가공	3,000	
15	삼환전기㈜	배삼삼	성동구	성수 2가 289-10	수배전반	3,000	
16	㈜성호코리아	강복환	"	" 277-24	전자식안정기	3,000	
17	정한실업	김준태	"	" 277-151	인쇄	3,000	
18	제양섬유㈜	홍순오	"	" 314-13	의류	3,000	



<p><b>◎ 서울특별시공고제 802 호</b></p> <p>도시계획시설(도로,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 및 신설 안 공 략 공 고</p> <p>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읍시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략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가. 공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 88.11.9 ~ 88.11.23 (14일간)</p> <p style="text-align: right;">1988. 11.9 서울특별시</p>
--	--

다.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신설안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모(㎡)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구로구 가리봉 29-6 번지일대	3,566	종기윤수

라.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및 신설안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	148	구로구시흥동 206-2	시흥동 184-7	
변경	소로	3	6	158	"	206-2	10 m연장
기정	소로	3	6	212	구로구가리봉동107-4	가리봉동105-28	16 m구간위치
변경	소로	2-3	6-8	212	"	"	및 폭원조정

<p><b>◎ 서울특별시공고제 809 호</b></p> <p>다동구역 제 2 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 <p>1. 건설부고시 제 367 호 (73.9.6)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880 호 (88.11.8) 로 사업계획 변</p>	<p>경 결정권 다동구역 제 2 지구에 대하여 지구내 토지소유자인 동아생명 보험(주)대표 안길환의 1인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있어 동법 제 15 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	--

2. 관계서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것이나, 특수형자에게는 본인문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것이며 토지등의 소유자와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의 명칭: 다동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중구 다동 33일대 (제29필지)  
     ○ 시행면적: 4,472㎡

다. 사업시행예정과: 종로구 신문로 1가 238 동야생명보험(주)대표 안철환, 중구 을지로2가 6 고려부자금융(주) 대표 김상찬  
 라. 공람내용: 사업시행 계획서 및 규약  
 마. 공람기간: 88.11.11 ~ 88.12.11  
 바.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 서울특별시 공고 제 817 호

전기용품 제조업체 허가취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를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8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상 호	면적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위반사항	취소일자
대우금속개발(주)	1-10-29	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310-56	김동구	법제 9조 제 2항	88.11.

구 고 시

◎ 마포구 고시 제 4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 변경

1. 마포구 고시 제 1호(87.3.28)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 허가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석교동 357-1호 소매시장신축공사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를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산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10월 일  
마 포 구 청 장

다 음

가. 건축물 일부 용도 및 면적변경 (지하 1,2,3층)

(기정) 주차시설, 기계실, 보링장,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  
(변경) 주차시설, 기계실, 보링장, 소매시장, 근린생활시설  
관리 및 방제실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 년월일 변경

가) 당초: 87.3.28 ~ 88.6.30  
나) 변경: 87.3.28 ~ 88.12.31  
(단순공기연장)

다. 공사실제도면: 별첨 (성략)

◎ 용산구 고시 제12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유치원)  
시행변경 허가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 4 호

( 87.5.30 )로 도시계획사업 (시설유치원)의 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11월 9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산1의 8 일대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 (학교:유치원) 시행변경 허가  
사업의명칭: 지성유치원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대지면적: 9,689.40 ㎡
- 2) 건축연면적: 3,547.82 ㎡
- 3) 규모: 지하층~지상 4 층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 가 1의 6
- 2) 성명: 저단법인 천주교 서울수도원 유적재단 이사장 서정렬

마. 사업기간 :  
 당초 : 87. 6.10 ~ 88.10.31.  
 변경 : 87. 6.10 ~ 88.12.30

바.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생략)

아. 지적현황도 및 정면 계획도 1부 (도면생략) . 끝.

◎ 성동구 고시 제 6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1. 서울시 고시 제 50 호 ( 83.1.26 ) 로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되고 같은 고시 제 209 ( 84.4.23 ) 로 시행허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준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 위임 규정 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 허가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 하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년 11월 3일

성 동 구 청 · 장

가. 사업의 시행지 : 성동구 능동 25번지 외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선화예술고등학교시설확충 ( 변경 )

다. 사업의 규모 :

시행면적 ~ 33,130.36 ㎡

면 적	[	학교동 92,755 ㎡
		강당동 667.62 ㎡
		계 760,375 ㎡



변경내용 ~ 강당동, 학교동 ( 증축 )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성동구 능동 25번지 학교법인 선화학원 이사장 박 보 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88.11.

준공예정일 : 89.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생략 사.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정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별첨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인규칙 제 3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곡 제 2 동상관인울 개각하였기 동규칙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사공개시일: 1988년 11월 10일 2. 관 인 명: 화곡제 2 동상관인				
◎ 강서구 공고 제 69 호  관 인 개 각 공 고  ○ 관 인 대 장		1988년 11월 일  강 서 구 청 장				
제 기		개 고 구 직 인				
인		영				
기관명	강 서 구 화 곡 제 2 동 상 관 인					
구 공 고  ◎ 강서구청 공고 제 70 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 행정처분공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 처 해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8년 11월 11일 강 서 구 청 장				
- 다 음 -						
지정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사항	조 치	비 고
제 90 호	한성기업	화곡동 381-11	김철석	무단제철	지정취소	참조불응
제 93 호	한양보일러	" 376-1	변중빈	"	"	"

◎ 성동구 고시 제 69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0 ( 80.5.12 ) 호로 결정 및 같은고시 제 648 ( 85.9.27 ) 호로 사업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25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에 관한 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제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성비과 ( 전화 450-1385 ) 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11.3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성동구 광장동 533-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명칭 : 다니엘학원 시설확충 ( 작업장 확충 )

다.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주소 : 서울시성동구광장동 533번지

성명 : 사회복지법인 구령회  
대표 이충성

라. 사업의 규모

- 내지 : 7,060 제곱미터
- 기존연면적 : 2,671.85 제곱미터
- 변경연면적 : 3,155.15 제곱미터 ( 증 522 제곱미터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87.12.1
- 준공예정일 : 89.5.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  
권 이외의 권리명세 : 사회복지법인  
구령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의 주소 성명 : 생략

◎ 관악구 고시 제 10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

1. 관악구 봉천동 산 136 처사에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제 1 항 규정에 따라 민영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 33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내용을 고시합니다.

1988.11.9

관 악 구 청 장

고 시 내 용

1988.11.11

관 악 구 청 장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 2. 사업주체 : 관악구 봉천동 1687-2호  
삼천리건설(주)
- 3. 위치 : 관악구봉천동 산 136
- 4. 규모 : 대지 7,157.35㎡  
건물 연립주택 3층 4동 98  
세대
- 5. 사업시행기간 : 88.11-89.5

-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봉천동 산  
67-32, 34
-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유치원)
- 사업의명칭 : 성북유치원, 성덕고등  
기술학교

- 다. 사업시행규모 :  
대지면적 - 2,902 ㎡  
건축면적 - 812.98 ㎡  
연 면 적 - 3,746.88 ㎡

◎ 관악구 고시제 104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 유치원 ) 시행허가  
변경 ( 사업시행자변경 및 기간연기 )

- 라. 사업시행자 :  
( 당초 ) : 사회복지법인성심복지재단이사장  
학교법인성북학원이사장 박성남  
( 변경 ) : 사회복지법인성심복지재단이사장  
학교법인성북학원이사장 이규철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85.12. 4  
준공예정일 : ( 당초 ) - 83.10.30  
( 변경 ) - 89. 6.28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67-32, 34 번지 성북유치원, 성덕  
고등기술학교신축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 6 조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경비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  
인의 주소, 성명 : 별첨 ( 생략 ) 끝.

㉠ 도봉구 고시 제 28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10.25

도 봉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종로구교남동 10 번지 ㈜미래주택 대표이사 박부철
3. 사업시행의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 도봉구쌍문동산 88 번지

다

- 나. 대지면적 : 3,707 ㎡
- 다. 건축면적 : 5,263.37 ㎡
- 라. 규모 : 연립주택 3층 3동 75 세대
4. 사업시행기간 : 1988.10-1989.6

㉡ 노원구 고시 제 296 호

하천점용 ( 도시가스관매설 )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 4 조 제 1 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 5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1988.10.26

노 원 구 청 장

음

허가일자	위 치	점용면적	허 가 내 용	수 허 가 자
88.10.26	도봉동 538-7 (도봉천)	도시가스관 매 설	1. 공작물 내역 300 % 가스관 = 53 m ( 0.7 m × 0.7 m 콘크 리트 보강 ) 2. 점용기한 88.11.1 - 영구	도봉구상계동 711 한일개발㈜ 대표이사



◎ 영등포구 공고 제 88-99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완료공고

- 1. 영등포구 고시제 87-6호(87.3.31) 동고시제 88-10호(88.5.13) 동고시제 88-20호(88.8.20) 및 동고시제 88-24호(88.8.29)로 허가 및 변경허가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의 2 및 같은법 제 8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2. 관제서류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10  
영등포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번지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

사업(시장) 영등포종합기제상가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

번영등포종합기제상가 대표이사 박갑문의 117 인

라. 사업규모: 대지 7,513.70 평

건축면적 3,746.90 평

건축연면적 14,224.82 평

마. 사업기간: 87.4.19 ~ 88.10

바. 위치도 및 준공도면: 생략

사업소고시


◎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32호

선박운항허가고시

한강구역내 우선연역에 대하여 한강법 제 25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 25조제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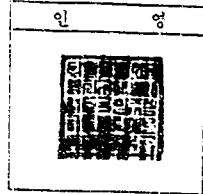
1988.10.24

한강관리사업소장

○ 선박운항 허가내용			
수허가자	위 치	목 적	내 역
㈜원광 대표이사 류복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앞 하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앞 하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2가 130번지 앞 하천	유선업을 위한 선박운항	유람선 4척
○ 허가기간 : '88.10.27 ~ '89.12.31			
◎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33호 선박운항허가고시 한강구역내 유선영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 25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 25 조 제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1988.10.25 한강관리사업소장	
○ 선박운항 허가내용			
수허가자	점 용 위 치	목 적	내 역
㈜세모 대표이사 유병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앞 하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앞 하천	유선업을 위한 선박운항	유람선 4척
○ 허가기간 : '88.10.26 ~ '89.12.31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 특별회계 관 시 명 : 서울특별시 북동지구개발사업소 직 명 : 개발사업비특별회계문입지출원 사용기간 : 1983년 6월 일부터 1988년 월 일까지			인 .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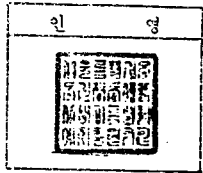
직 인 례 기 신 고 서

- 회 계 명 : 특별회계
- 관 서 명 : 서울특별시육동지구개발사업소
- 직 명 : 국민주택비특별회계 본업지출원
- 사용기간 : 1983년 5월 일부터  
1988년 월 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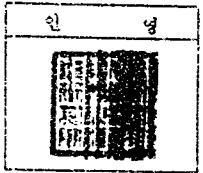
직 인 례 기 신 고 서

- 회 계 명 : 특별회계
- 관 서 명 : 서울특별시육동지구개발사업소
- 직 명 : 개발사업비특별회계 지출원
- 사용개시일 :



직 인 례 기 신 고 서

- 회 계 명 : 특별회계
- 관 서 명 : 서울특별시육동지구개발사업소
- 직 명 : 국민주택비특별회계 지출원
- 사용개시일 :



사 영

© 1988년 10월 25일자.

8급 공무원 전보

경계 459 호

성 명	발 명 사 항	부 서	직 급
강 철 원	총 파 구	종 로 구	지방행정서기

◎ 1988년 11월 1일자 7급 공무원 전입 명제 46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태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시민과 근무를 명함.	안동시	지방행정주사보
◎ 1988년 10월 31일자 지방고용직공무원 파견 및 파견해제 명제 46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옥권	세종문화회관 파견 ( '88.11.1 - '89.6.30 )	송파구	지방기계보조원
이경희	올림픽관리담당관 파견해제	용산구	지방타자원
◎ 1988년 10월 31일자 5급이하 공무원 파견해제 명제 46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황병철	올림픽준비단 파견근무를 해제함.	은평구	지방행정사무관
김원녕	"	세무지도과	"
유종모	"	성북구	행정주사보
한성만	"	서울대공원관리(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태영	"	세무지도과	"
이형재	"	관악구	지방행정서기
동연호	올림픽관리담당관 파견근무를 해제함.	양천구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주	"	시립대학교	지방행정주사
김성래	"	강남구	지방행정주사보
◎ 1988년 11월 1일자 8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전보 명제 46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상민	양천구	종합운동장	지방전기지원
◎ 1988년 11월 5일자 6급이하 보건의직공무원 파견 명제 46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안영주	서울지방검찰청 파견 ( '88.11.5 - '89.11.4 )	내무국	지방보건의사
김종철	"	중랑구	지방보건의사보

인 사 발령 통 지				령제 465 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행정사무관 장 경 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88.11. 1				대 통 령
인 사 발령 통 지				령제 466 호
양천구청장 전 명 호 부이사관 이사관에 임함.				
'88.11. 5				대 통 령
◎ 1988 년 11 월 5 일 자 2 급공무원 승진임용				령제 46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배 병 호	세종문화회관 관장	지방이사관	세종문화회관장	지방부이사관
◎ 1988 년 11 월 8 일 자 5 급공무원 전보				령제 468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박 기 원	총 보 구		내 무 국	지방행정사무관
김 충 수	노 원 구		"	지방행정사무관시보
한 문 철	도 봉 구		"	"
방 태 원	상 동 구		"	"
한 국 영	영 등 포 구		"	"
홍 성 진	구 르 구		"	"
◎ 1988 년 11 월 11 일 자 4 급공무원 전보				령제 469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흥 권	불가지도과장	직무대리	내 무 국	지방서기관
박 두 섭	육동지구개발사업소	관리과장	"	"
김 차 결	운 영 과 장		"	서 기 관

◎ 1988년 11월 7일자 인사발령통지 명제 470호 서울특별시 환경녹지국 전건생활과 지방서기관 배 일 환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환경녹지국 전건생활과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민국 서 기 관 최 영 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올림픽준비단 올림픽기획담당관실 지방서기관 진 영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대 통 령			
◎ 1988년 11월 12일자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명제 471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서정룡	교통관리사업소	교통기획과	지방행정주사
장길원	"	구로구	지방행정주사보
신달식	"	종합건설본부	지방행정서기
유미영	노원구	중랑구	"
김춘숙	세종문화회관	종로구	"
송은경	교통관리사업소	총무과	지방타자원
김미란	서대문구	공원과	"
◎ 1988년 11월 16일자 6급이하 공무원 파견(연참) 명제 472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문형욱	서울시립대학교 파견 ( '88.11.17 - '89.5.16 )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 1988년 11월 15일자 기술직 시보공무원 전보 명제 473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윤진선	건설자재시험소	건설자재사업소	지방화공기관보서보

◎ 1988년 11월 16일자 기술직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명제 474 호				
성명	발령 사항		원 부서	직 급
대용기 최혜인	성 등 구 용 산 구		내 부 국 한강관리사업소	지방건축기사 지방토목기사보
◎ 1988년 11월 14일자 7급이하 공무원 징계 명제 475 호				
성명	발령 사항		원 부서	직 급
장상호 나병균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 에 처함.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견책" 에 처함.		서부건설사업소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보
◎ 1988년 11월 15일자 직무대리 발령 명제 476 호				
성명	발령 사항	원 부서	직 위	직 급
장연태	전자제산소 전산기획관 직무대리를 명함.	전자제산소	전산운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1988년 11월 15일자 기능직공무원 파견해제 명제 477 호				
성명	발령 사항	원 부서	직 급	
양재현 홍봉식	남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파견 해제 "	안양하수처리장 달천하수처리장	지방기계장 ( 7등급 ) 지방기계원 ( 8등급 )	
◎ 1988년 11월 16일자 기능직공무원 전보 명제 478 호				
성명	발령 사항	원 부서	직 급	
김병조 오광록 김중환 이양현 윤석환	동부근로청소년회관 보건환경연구원 서초구 암사수원지 서대문구	구의수원지 안양하수처리장 암사수원지 구의수원지 남지하수처리장	지방기계원 ( 8등급 ) 지방기계장 ( 6등급 ) 지방기계원 ( 8등급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신동혁	순경구	시부건설	지방기계장 (7등급)	
박전규	장서구	남부건설	"	
윤한순	단장관리사업소	시부건설	지방기계장 (6등급)	
이창수	"	"	지방기계장 (7등급)	
홍사균	승복구	도농구	지방전기원 (8등급)	
이근승	농부군도청소년회관	노원구	"	
김갑교	보건원경연구원	서초구	"	
② 1988년 11월 16일자 5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명제 47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윤석제	종합건설본부	내무국	지방기계기과	
③ 1988년 11월 16일자 기술직공무원 징계취소 명제 48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강영창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2,3호에 의거 해임에 처함.	기술심사담당관	지방전기기사	
김부동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제1인 사위원회 의결 사항)	복동지구개발 사업소	지방전기기과	
이우영	"	"	지방전기기사	
이원부	"	"	"	
이원일	"	"	"	
④ 1988년 11월 14일자 5급 공무원 추서 명제 48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위	직급
김구소	지방행정사무관에 추서함.	강남구	서무1계장	지방행정주사
⑤ 1988년 11월 17일자 지방별정직공무원 8급상당이하 의원면직 명제 48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남우현	원예 이하에 그직을 면함.	경찰국면허과	지방별정직 9급상당	
박일국	"	전자계산소	지방별정직 8급상당	



◎ 1988년 11월 17일자				6급 공무원 특별임용 (지방-국가)		명적 433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연준	행정주사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장.							